

검 토 보 고

파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

- 동 조례안은 1998년 10월 2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2일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음.

□ 제안이유

지방공무원법(법률제5568호)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의 정년이 단축됨에 따라 이에 맞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정년을 규정하고 있는 동 조례를 개정하고 휴직기간과 휴직의 효력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는 한편 지도원이 퇴직할때에는 신규 충원없이 정원을 감축하는 규정을 명문화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가. 고용직공무원의 상한 연령을 58세에서 57세로 함.(안제3조)
- 나. 휴직과 관련하여 휴직기간, 휴직의 효력에 대하여 규정함.(안제6조의2, 제6조의3)
- 다. 지도원이 퇴직한 때에는 그 정원을 감축된 것으로 봄.(부칙2항)
- 라. 근무상한 연령이 '98. 12. 31인 자와 '99. 6. 30인 자는 각각 해당일자에, '99. 12. 31인자와 2000. 6. 30인자는 종전의 정년보다 각각 6월과 9월을 단축하도록 함.(부칙3항)

□ 검토의견

-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정년을 1년씩 단축하고 정년 연장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지방공무원법(법률5568호)이 '98. 9. 19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고용직 공무원의 정년을 58세에서 57세로 단축하고 휴직기간과 휴직의 효력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신설하여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.